

[] 징수유예등
[] 체납처분유예 신청서

| | |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10일(예외적인 경우 즉시) |
| 납세자 | 성명(법인명) | 주민(법인·외국인)등록번호 |
| | 주소(영업소) | |
| | 전화번호(휴대전화) | 전자우편주소 |

신청내용

|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 | | | | | 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을 받으려는 지방세 | | |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|-----|
| 세목 | 과세연도 | 과세번호 | 납부기한(독촉기한) | 지방세 | 가산금 | 계 | 지방세 | 가산금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

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의 구분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을 받으려는 사유 | [징수유예등]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__호 () [체납처분유예]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__호() |
| 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을 받으려는 기간 |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|

납부기한 및 분납금액

| 횟수 | 연도 | 세목 | 납부기한 | 분납금액(A+B) | 지방세(A) | 가산금(B) |
|----|----|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1회 | | | | | | |
| 2회 | | | | | | |
| 3회 | | | | | | |

담보물건

위와 같이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의3제1항 및 제105조제4항에 따라 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

위임장

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“위임받은 자”에게 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의 신청을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자(납세자)

(서명 또는 인)

위임받은 자(신청인)

(서명 또는 인)

| | | | |
|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|
| 위임 받은 자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위임자와의 관계 |
| | 주소 | | 전화번호 |

첨부서류

- 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을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
- 납세담보제공서(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9호서식)

수수료
없음

작성방법

1. 성명(법인명): 개인은 성명,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.
2. 주민(법인·외국인)등록번호: 개인(내국인)은 주민등록번호, 법인은 법인등록번호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3. 주소(영업소)
 - 개인: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,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 -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: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,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. 다만,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.
4. 전화번호: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(휴대전화)번호를 적습니다.
5. 전자우편주소: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(E-mail 주소)를 적습니다.
6. 세목, 과세연도, 과세번호, 납부기한(독촉기한), 지방세, 가산금, 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을 받으려는 지방세에 관련된 사항을 적습니다.
7. 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의 구분: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고지유예, 분할고지, 징수유예 중 신청하려는 징수유예등의 종류 또는 같은 영 제93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적습니다.
8. 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을 받으려는 사유: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을 받으려는 사유를 적습니다.
 - 가. 징수유예등 사유(「지방세징수법」 제25조)
 - 1) 풍수해, 벼락, 화재, 전쟁,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
 - 2)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
 - 3)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
 - 4)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(重傷害)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
 - 5)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. 이 경우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에 따름.
 - 나. 체납처분유예 사유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05조제1항)
 - 1)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
 - 2)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
9. 납부기한 및 분납금액
 - 가. 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을 받으려는 금액: 납부할 금액(체납액) 중 징수유예등(체납처분유예)(분할고지 제외)을 받고자 신청하는 금액을 적습니다.
 - 나. 분할납부 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: 분할고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분할납부 금액, 납부 예정일 등을 적습니다.
10. 담보물건: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7조 또는 제10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담보를 요구할 경우 제공 가능한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5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